

## 알아봅시다... 공무원 행동강령

### 제13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)

- 공무원은 관용 차량·선박·항공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,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해서는 아니 된다.

#### 도입 배경

- ◆ 공무원이 공용물을 개인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,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간접적 이득(부가서비스)의 경우도 공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확립

#### 내용 해설

- ◆ 공용물(재산): 사무용,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제공되는 물건  
(예: 청사, 관사, 공용차량, 실습기자재, 사무용 기구 등)
- ◆ 예산 사용에 의한 부가서비스 (예시: 항공마일리지,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, 물품구입에 따른 사은품 등)
- ◆ '사적인 용도의 사용·수익'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용물(재산)의 제공 목적을 벗어나 개인적 편의나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

#### 위반 예시

- ◆ 학교예산으로 물품 등을 구입하고 발생한 포인트 및 캐시백을 개인이 적립하여 사용
- ◆ 예초기, 엔진톱 등 각종 고가의 공구를 주말마다 개인 소유 농장에 가져가 사용
- ◆ 체육교과활동용으로 구입한 탁구 라켓을 일과 후 개인 탁구클럽에 가져가 사적용도로 사용
- ◆ 학교예산으로 구입한 컬러프린터기에서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를 여러 차례 다량으로 출력하여 사용
- ◆ 공무출장으로 발생한 항공 및 철도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
- ◆ 학교 공용물로 구입한 비품, 소모품 등을 개인적 용도로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

#### 부당한 지시 관련 Q&A

1] 정부구매카드로 다과 및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고 발생하는 민간기업의 포인트 (예: 해피포인트 등)를 개인이 적립해도 되는지?

☞ 기관의 법인카드 등을 사용함으로써 적립된 포인트는 예산 사용으로 인한 부가서비스이므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, 공무로 사용하여야 할 것임.

2] 학교 예산으로 가입한 교수학습자료 이용 사이트에서 참여한 학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1등으로 당첨된 학교에 가입교사 수 만큼 경품으로 캠퍼터를 지급할 경우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수령해도 되는지?

☞ 해당 경품은 학교의 예산 집행에 따른 부수적인 혜택으로 개인이 수익할 수는 없고, 학교 비품으로 등록하거나 복지사설 등에 기부하는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.

## 청탁금지법 Key Point

### ▶▶ '스승의 날' 및 '교생(교육실습생)'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

#### ◆ 「스승의 날」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

대상	구분	행위	허용 여부
- 담임교사, 기간제교사 등 - 유치원 원장, 교사 - 어린이집 원장 (어린이집 교사는 미해당)	카네이션	학생 대표 등이 (반장, 부반장, 학생회 임원에 한정되지 않음) 공개적으로 주는 것	○
		개별 학생이나 학부모가 주는 것	X
	선물	담임교사, 교과교사, 교장, 교감 등 학생의 지도·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에게 선물을 주는 것(금액 상관없이 허용안됨)	X

#### ◆ 「교생(교육실습생)」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

- 교생(교육실습생)과 교생(교육실습생)을 지도, 평가하는 담당 교사는 '직접적인 이해관계자' 이므로 어떠한 금품등(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 등)도 허용되지 않음
- 교생(교육실습생) 소속 대학에서 실습 중인 학교에 보내는 기념품
  - 대학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(홍보용품) : 수수 가능
  - 대학에서 특정인(특정학교)를 대상으로 주기 위해 제작된 기념품(홍보용품) : 수수 불가 (기념품, 홍보용품이 아닌 선물에 해당됨)

#### ① 스승의 날에 학생이 선생님께 편지나 카드를 써서 드릴 수 있는지?

☞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선생님께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사회상 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,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허용됨

#### ② 교생(교육실습생)이 실습 중인 학교의 지도교사에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?

☞ 교생(교육실습생)에 대한 지도·평가를 담당하는 지도교사와 교생은 '직접적인 이해 관계'가 있어 어떠한 음식물, 선물 등도 절대 허용될 수 없음

## 교육청 청렴행사 홍보



2019년 부산광역시 교육청 청렴 한마음 체육대회  
(2019.4.27.)



2019년 초·중 교감·행정실장 청렴연수

## 2018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례

### 교무·학사 및 일반행정

#### ■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업무 처리 부적절

 기관경고

-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회의 심의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지 않았고, 201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55건 중 22건,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125건 중 123건, 2016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327건 중 317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음



■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.

-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,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정정 사항의 발견 학년도 담임교사가 정정 처리해야 한다.

■ 「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」 「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)」

#### ■ 공문서 관리 부적절(문서 변조)

 경고

- 2017년~2018년 11월까지 세출예산 집행 시 결재를 완료한 계좌이체서를 담당자가 임의로 에듀과인 프로그램에서 다운받아 수정하는 등(4건) 공문서 수정을 부적절하게 처리함



■ 결재를 받은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종이문서의 경우로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려는 사항이 명백한 오류의 정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,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.

■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

■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

## 인사, 복무, 학교법인 분야

### ■ 기간제교사 보수 지급 부적절

✓ 주의, 추가지급 347,640원

- 기간제교사 ○○○의 근무연수가 4년 미만인데도 2015.3월 정근수당가산금과 정근수당추가가산금 130,000원을 지급하고, 7월 정근수당 지급 시 월봉급액 지급률 15%를 10%로 잘못 적용하여 167,090원을 과소 지급함
- 퇴직 교육공무원인 기간제교사 △△△의 근무연수 5년을 0년으로 잘못 산정하여 정근수당가산금 96,710원을 미지급하고, 교원연구비를 29,020원 과다 지급함
- 기간제교사 □□□의 2017.7월, 2018.1월 정근수당 지급 시 월봉급액 지급률 10%를 5%로 잘못 적용하고 2017.1~2월분을 누락하여 242,860원을 과소 지급함



■ 기간제교원의 정근수당은 1월 1일(7월 1일)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 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(7월 1일)부터 6월 30일(12월 31일)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월봉급액의 0~50%까지 차등하여 월할 계산한다.

-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50,000원~100,000원까지,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은 근무연수 20년 이상인 사람에게 10,000원~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고, 유초·중·고등(특수)학교 소속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.

- 「유초·중등(특수)학교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」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- 「공립 유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」

### ■ 계약제교원 임용 구비 서류 부적절

✓ 주의

- 2015.3월~2016.3월까지 계약제교원 9명을 채용하면서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(의원, 병원, 종합병원)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에서 발급한 일반건강진단서를 징구함



■ 계약제교원(기간제교사 또는 시간강사) 등을 임용할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구비하여야 한다.

- 「교육공무원법」 「교육공무원 인사실무 매뉴얼」 「유초중등(특수)학교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」

### ■ 교육공무직원 인사 관리 소홀

✓ 주의

- 2014학년도부터 2018학년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소속직원 8명에 대하여 매년 2회, 6개월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않음



■ 사용부서의 장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성적을 매년 5월·11월말(교육행정기관 3월·9월말) 기준으로 평가 하되, 특별한 경우 평가 시기와 방법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.

- 「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」 「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매뉴얼」